

#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상진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30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2월 31일

발 의 자 : 김상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동길, 김경우, 김광수,  
김기대, 김달호, 김생환,  
김혜련, 문영민, 박기열,  
송재혁, 이세열, 조상호,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,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관·관리되고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하여 시장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(안 제10조제1항 신설).
- 나.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장은 본인의 승낙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함(안 제10조제2항 신설).
- 다.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규정함(안 제10조제3항 신설).
- 라. 시장에게 홈페이지 수록 개인정보를 암호화 저장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제4항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참조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개인정보 보호)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
2.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
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
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제10조(개인정보 보호)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</li> <li>2.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</li> <li>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</p>